

#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의 위탁 및 시설 위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.7.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기간을 완화하도록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위탁관리 제6조의 위탁관리 기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함
- 나. 종전의 위탁관리기간 3년은 노인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 제한 조례 부적정 운용으로 이를 개선하여 5년 이내로 재정하도록 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2016. 8. 9 ~ 8. 30, 제출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(기획감사실-8780(2016.8.9)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8648(2016.8.3))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있음(주민생활지원과-51059(2016.8.9))  
반영계획서 제출 (주민생활과-57965 (2016.9.9))

개선의견	반영결과
복지회관 고유 업무 범위 확대 의견 (취업상담 등)	미반영 (취업상담 등은 지회 고유업무 운영, 추후 여건 변동시 검토 반영 계획)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
연락처	(033) 330 - 2188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### 제21조의2 (시설의 위탁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**5년 이내**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